|  |  |  |
| --- | --- | --- |
|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7호  부동산 소유권 취득세 징수관리 업무 중에 발생한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아래의 상황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토지·부동산 권리 이전이 인민법원·중재위원회의 확정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발생함으로써 납세자가 부동산 매각 영수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의 집행재정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2. 신축 분양주택을 판매한 부동산개발기업이 세무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였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비정상(非正常)기업 명록에 추가 등 원인으로 인해 부동산 매각 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축 분양주택 구매자가 부동산 취득세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관련 상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3.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9월 25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契税纳税申报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7号  　　根据房地产权属转移契税征管中遇到的实际情况，现将下列情形契税纳税申报有关问题公告如下：  　　一、根据人民法院、仲裁委员会的生效法律文书发生土地、房屋权属转移，纳税人不能取得销售不动产发票的，可持人民法院执行裁定书原件及相关材料办理契税纳税申报，税务机关应予受理。  　　二、购买新建商品房的纳税人在办理契税纳税申报时，由于销售新建商品房的房地产开发企业已办理注销税务登记或者被税务机关列为非正常户等原因，致使纳税人不能取得销售不动产发票的，税务机关在核实有关情况后应予受理。  　　三、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9月25日 |